

2019학년도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냉 정 초 등 학 교

냉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

시 행 1996. 4. 1

관련 근거

- 교육기본법(2000. 1.28, 법률제 6214호)
- 초·중등교육법(1999. 8. 31, 법률 제 6007호)
-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(2000. 2. 28, 대통령령 제16729호)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 1.28, 법률 제 6216호)
-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2000. 5. 16, 경기도조례 제3004호)
- 초·중등교육법 신설·개정안(2004 .8. 26, 법률 제6714호)
-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(2004. 1. 30, 교육인적자원부특수보건과-291)
- 초·중등교육법 신설·개정안(2011 3. 18 개정, 대통령령 제22712호)
-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
(시행 2013. 4. 1, 제4조(위원의 임기)제1항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적】

- 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『학교 공동체』를 구축한다.
-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『학교운영위원회』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 2 조 【방침】

-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,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
-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
- ③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
- ④ 법령, 조례, 규정,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
- ⑤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

제 3 조 【명칭】

본 위원회는 ‘냉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’라 칭한다.

제 2 장 운 영

제 4 조 【구 성】

구분	학부모위원	교원위원	지역위원	유치원 학부모위원	계	비고
초등학교	45.5 %	36.4 %	18.1 %	초등학교 구성 비율에 해당하지 않음 (추가구성)	100%	※ 학생 수가 1천명 미만 학교: 9인 이상 12인 이내
임원수	5명	4명	2명	1명	11명 (유치원 학부모위원 포함하여 총 12명)	

※ 위 표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.

○ **병설유치원의 경우**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**통합하여 운영함** (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) 다만, 병설유치원 교원대표는 원장을 겸임하는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이나, 원감을 겸임하는 교감이 겸임할 수 있다. 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
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과는 별도로 유치원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추가하여 구성 할 수 있음)

제 5 조 【위원의 자격】

- ① 모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.
- ③ 지역위원은 본교 학구의 인사로 한다.
- ④ 학부모 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.

제 6 조 【위원의 의무】

-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

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- ③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7 조 【위원의 자격 상실】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-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- ③ 본교 규정 제 5조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
- ④ 학부모 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- ⑤ 위원이 교육발전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적위원 2/3의 찬성으로 결정한 때

제 8 조 【위원의 선출 시기】

-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3. 21 이내에 완료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.

제 9 조 【위원의 선출 방법】

- ① 국·공립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- 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-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- ④ 지역인사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제 10 조 【위원장 및 부위원장】

-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- ③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.
- ④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,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(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)
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.

제 11 조 【위원의 임기】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
(시행 2013. 4. 1, 제4조(위원의 임기)제1항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.(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)
-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2 조 【위원의 선출절차】

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2000. 5. 16)

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 학교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, 정비된 학교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한다.

- ① 교원위원
선출공고→입후보 등록 및 추천→전체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→당선자 통지
- ② 학부모위원
선출공고→선거안내→입후보 등록→직접선거→당선자 공고 및 통지
가. 1차 선거안내----반드시 회의목적(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 명시)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문을 아동편에 발송하고 참석여부확인
과 함께 불참자의 위임장을 받는다.
나. 2차 선거안내----학부모위원 출마·등록 및 등록자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.
- ③ 지역위원
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→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→선출

제 13 조 【위원의 권한】

- ① 학교운영 참여권 : 운영위원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또는 건의
- ② 중요사안 심의권 :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질의,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심의
- ③ 보고 요구권 :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
- ④ 교육위원, 교육감 선출권 : 운영위원 전원에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 부여

제 14 조 【심의 및 자문사항】

-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-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- ⑥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-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-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-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-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-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- ⑫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- ⑬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(특정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 - 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- ⑮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- ⑯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- ⑰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※ 다만,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※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,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 15 조 【서류 제출 요구】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 【회의 소집 등】

-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정기회는 다음 학년도 학교회계 예산·결산 심의를 위한 회의소집일로 한다.
-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)
-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17 조 【안건의 제출·발의】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제 18 조 【의사 등의 정족수】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19 조 【회의 공개원칙】
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각종통신문·학교 게시판·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·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·교원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【회의록 작성】
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·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【소위원회의 설치】

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단,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.

제 22 조 【간사】

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23 조 【운영경비 등】

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4 조 【학교내외의 자생 조직】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5 조 【기타 규정】

(위임 규정)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6 조 【학부모 및 학생대표 등 의견 수렴】

1. 제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

※ 학운위 학부모 의견 수렴 :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의견 수렴이 아닌 상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

○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(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제15조의2)

- 심의전 학교홈페이지에 심의 내용을 5일 이상 게시
- 게시할 때에는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
-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 제출 가능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

2.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9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04. 4. 22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 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2차 개정 2008. 4. 11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 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3차 개정 2011. 4. 1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 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4차 개정 2015. 6. 19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 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5차 개정 2017.12.29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 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